

2024년도 검찰시민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계획 공고

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검찰시민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므로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- 우리 청은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(순천지청 예규 제20호)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검찰시민위원 4명을 새로 위촉할 예정입니다.
-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, 불기소 처분, 구속영장청구, 구속취소 등 검사의 수사 중 사건에 관하여 안건을 심의한 후, 그 사건의 처리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.
-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」 제17조, 제18조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.

2024년 11월 27일

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

- 모집 기간: **2024. 11. 27.(수) ~ 2024. 12. 10.(화)**
- 임 기: **임기 2년(2024. 12. 17. ~ 2026. 12. 16.)**, 1회 연임 가능,
월 1~2회 위원회 참석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
- 지원 방법: 지원서 다운로드 받은 후 **이메일(mmingg98@spo.go.kr)** 또는
순천지청 사건계 **팩스(061-729-4313)**, **우편**으로 신청(방문신청 포함)하시기 바랍니다(2024. 12. 10.까지 도달한 신청서만 유효).
이메일로 신청할 경우, 자필서명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사진을 스캔하여 첨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우편으로 신청할 경우, 접수기간 내에 우편물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(주소: 순천시 왕지로 19,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시민위원회 담당자 앞)
- 결과발표: **2024. 12. 17.(화)** 위원 선정 발표 (개별통보)

결격사유

【「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」 제17조(결격사유)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【「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」 제18조(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)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대통령
2. 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
3. 입법부·사법부·행정부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·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
4. 법관·검사
5. 변호사·법무사
6. 법원·검찰 공무원
7. 경찰·교정·보호관찰 공무원
8. 군인·군무원·소방공무원 또는 「예비군법」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